Ⅲ.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측면

1. 소유 및 지배구조

■ 기업지배구조 개선

- (정책내용)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, 소액주주 등 비지 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
 - 집중투표제.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
- (영향)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 - -보험회사의 지배구조가 대주주외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임. 이에 따라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철저 한 경영공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금산분리 강화

- (정책내용) 금융·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(발행주식의 15%)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%까지 낮추어 의결권 제한을 강화
 -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(2009년 개정된 9%를 4%로 환원)
 -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

- (영향)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을 포 함한 종합금융그룹화를 통한 성장과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로 작용할 것 으로 보임
 - 또한 대주주의 적격성이 동태적으로 전화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법 규리스크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

- (정책내용) 총수일가의 불법과 사익편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「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」상의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 불가능. 대주주 등의 중 대범죄 사면권 엄격제한
 -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화수
 - 이를 위해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」과「공정거래법」을 개정
- (영향)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상에서 대주주의 적격요건을 보다 충실히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2 보험모집채널

■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

- (정책내용)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
 -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 로조건 보호
 - ※ 특수고용직 근로자 : 캐디, 학습지 교사, 레미콘 운송차주, 보험

모집인, 택배기사(퀵서비스기사), 대리운전, 텔레마케터 등

- (영향) 설계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보험회사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 험에 대한 보험료추가 부담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따라 판매책임 부담 등에 있어서 판매자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.
 -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사의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채널 전략을 운영 할 필요가 있음

3. 인력운용

■ 60세 정년 연장

- (정책내용)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함(「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).
- (영향) 법적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회사의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임

■ 정리해고 대타협기구 설립

- (정책내용) 근로자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사측의 일방적 인력구조조정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설립하여 운영
 - 「근로기준법」의 정리해고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
- (영향) 유연한 인력운용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생산성 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. 이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4. 경쟁정책

- (정책내용) 시장의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을 촉구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집행체계를 개선할 예정
 - 비료, 농약, 사료, 에너지 등 가격안정화를 위해 사업체가 가격담합 행위를 한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, 집단소송제도 도입, 피해 자의 해당담합행위 직접 금지청구권을 인정
 - 공정거래 관련법의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법 집행의 견제와 공정한 법 집행을 확보
- (영향) 보험회사들의 담합행위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. 가격 등 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 과거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징벌적배상금 등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.
 - 따라서 개별 보험회사는 공정한 경쟁정책을 근본으로 경쟁전략을 수 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.